#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91

발의연월일: 2025. 3. 31.

발 의 자:이수진・서미화・송재봉

송옥주 • 전진숙 • 박홍배

용혜인 • 이건태 • 한정애

허성무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2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용자 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이 병행하여 마련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규정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장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규정은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4조의 2 신설).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제46조, 제51조의3, 제55조제2항, 제56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 제11조(적용 범위) ① ------근 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로자를 사용하는 모든-----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 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삭 제>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 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삭 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 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소규모 사업 또는 사 업장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 동부장관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정적・행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

 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